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 12. 14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따 로 붙 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6년 12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노 재 근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6. 12. .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6년 12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과세기준이 표준시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고,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가. 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할 금액을 산정 할 때 과세표준시가를 적용하던 것을 개별공시시가를 적용 산정하도록 함.
- 나. 주차장 정비지구 용어의 삭제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운동시설은 면적 120㎡당 1대, 위락시설 중 유흥음식점은 시설면적 50㎡당 1대와 기타지역은 시설면적 80㎡당 1대로 강화함.
- 다. 비영리 공익법인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재계약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함.

3.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토지가격의 과세기준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수탁자가 납부하여야할 금액을 산정 할 때, 과세표준시가를 적용하던 것을 개별공시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며, 주차장 정비지구 용어의 삭제와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운동시설은 면적 120㎡당

1대, 위락시설 중 유흥음식점은 시설면적 50㎡당 1대, 기타지역은 시설면적 80㎡당 1대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고, 비영리 공익법인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재계약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의 납부액 산정시 토지가격을 과세표준 시가에서 개별

공시시가를 적용토록 함으로서 좀더 현실성 있는 토지가격 적용이 기대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익법인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

서도 재계약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고 공개 경쟁 입찰방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서 사업 참가자의 폭을 넓히고

균등한 기회부여 등 일부 업자의 특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